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對영국 수출환경

영-EU 브렉시트 협상 타결 : 무관세 교역 합의

지난 12월 24일,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이후 미래관계와 관련된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로써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상호무관세 · 무쿼터(무관세적용 상품수량 제한 없음) 교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협상종료 기한 막바지까지 양측의 입장 차가 커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우려하던 영국 식품업계에서는 협상 타결을 반기고 있다. 영국 전국농민연합(NFU, National Farmers Union) 회장 미네톼 바터스(Minette Batters)는 “무관세 협정이 매해 140억 파운드 이상을 EU로 수출하는 영국 농민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 특히 육류와 생선을 제한없이 수출할 수 있게 협의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통관 · 검역절차 도입

하지만 기존에 없던 통관과 검역절차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식품 수출입 비용상승과 유통과정에서의 혼란도 예상된다. 스코틀랜드도매협회장 콜린 스미스(Colin Smith)는 <프레스앤저널(The press and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신선식품과 원료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증가한 행정절차와 서류작업이 영국 공급망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식품가격 상승을 일으키며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줄이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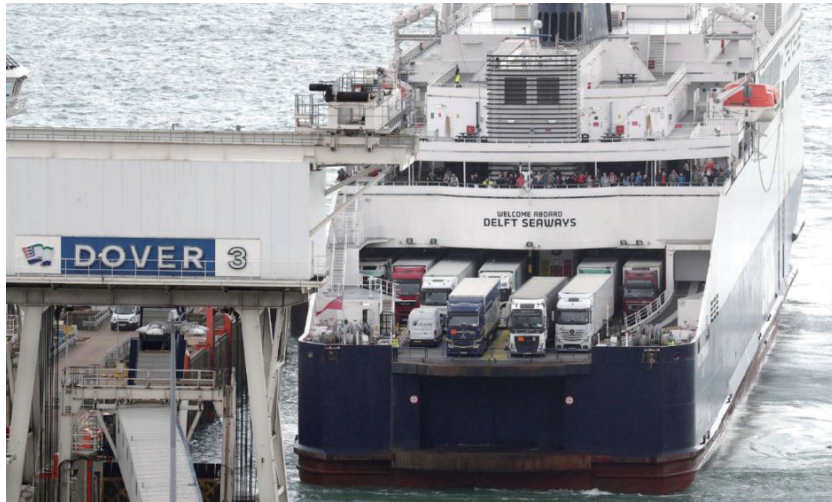
이어 콜린 스미스는 “대형유통업체들은 증가하는 통관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량의 식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영국 최대 슈퍼마켓체인 테스코(Tesco)의 회장 존 알란(John Allan)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수출입과정에서 행정처리가 조금 늘어나겠지만, 소비자들이 가격에서 느끼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반 혼란 우려

영국 식음료연맹회장 이안 라이트(Ian Wright)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식품전문지 <저스트푸드(Just Food)>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여러 분야에서 환영할 만한 협상을 했지만, 식품산업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면서, 새로운 통관절차와 값비싼 열처리 목재팔레트 이용 등의 비합리적인 요구조건은 식품공급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1월 6일자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북아일랜드와 영국 간의 식품공급에 이미 차질이 생기고 있다. 양국을 오가는 물류 수송 트럭들이 적합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통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을 구성하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중 북아일랜드만 EU에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되었고, 따라서 북아일랜드와 타 지역 간의 교역은 영-EU 교역 규정을 따른다.



「가디언지는 “여러 그레이트 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통칭) 수출업자들이 이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기사에 따르면, “북아일랜드의 소비자들 이 테스코 등의 대형마트에 빈 매대가 보이고, 특히 냉장식품이 많이 부족하다”고 전하고 있다.

새로운 원산지 규정

브렉시트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진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영-EU 간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이 EU산, 영국산임을 증명해야 한다. 예로, EU산 식품이 영국으로 들어갈 때는 관세를 내지 않지만 영국에서 아일랜드(EU)로 재유통될 때는 해당 물품이 영국산이 아니므로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한 EU관계자는 “영국은 더 이상 EU의 유통 허브가 아니다, EU기업들은 영국 허브에 의존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한국 수출기업의 경우, 영국과 EU로 수출할 때 적용되는 FTA가 각각 다른 만큼 수입자의 인증수출자 소재국을 확인하고, 특히 한-영FTA 상의 직접운송요건 완화사항 등 확인이 필요하다. 한-EUFTA에서는 단일탁송화물(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서 일시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 운송서류가 발행된 물품)의 단순 환적과 일시 보관이나 경유 수출은 직접운송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한-영FTA는 3년간 한시적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어

EU국가의 세관 통제 하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을 허용한다.



Key Point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만에 실질적으로 EU로부터 독립했다. 미래관계 협상이 전환기인 종로시점 막바지에 극적으로 타결된 탓에 이미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1월 현재, 양측의 수출입 기업들은 협정의 세부내용 파악에 주력하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국-영국 간 FTA가 발효되어 한국에서 영국 또는 EU로 직수출 시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EUFTA 인증수출자와 별도로 한-영FTA 인증수출자 신청이 필요하고, 영국을 통한 EU 유통, EU를 통한 영국 유통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❶ https://www.just-food.com/news/quote-unquote-food-industry-reacts-to-brexite-trade-deal_id144967.aspx ❷ <https://www.specialityfoodmagazine.com/news/brexit-deal-fine-food-industry> ❸ <https://www.pressandjournal.co.uk/fp/lifestyle/food-and-drink/2772517/brexit-scottish-food-exporters-and-producers/> ❹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1/jan/06/northern-ireland-facing-food-supply-disruption-over-brexite-mps-told> ❺ <https://www.ft.com/content/c068fc5f-dfe4-4890-8153-a59e1833c100>